거치식예금 약관

- 제1조(적용범위) ①거치식예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이란 정기예탁금등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예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.
 - ②이 예금에는 이 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.
- 제2조(지급시기)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. 다만,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 라도 지급한다.
- 제3조(이자) ①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탁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 께 지급한다. 그러나,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 할 수 있다.
 - ②만기일 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탁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한다.
 - ③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예탁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탁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.
 - ④복리로 계약된 예금의 만기일 후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초 계약원금에 대하여 단리의 계산방법으로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 다.
- 제4조(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) ①정기예탁금을 만기일 전에,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장기예금으로 계약을 변 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예탁일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 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. 다

만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.

②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변경전 예탁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.